

날 짜	2015-2-10	튜 터	김엽래
강 좌 명	[E 1733]핵심 소방설비(산업)기사 필기(기계)(신규)→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(김엽래)		
	[L 571]㉠ [소방설비기사-기계]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		
교 재	[ISBN 236]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(핵심)→ p 11		
참 고 이 미 지			
<p>(4) 수동식 소화기의 설치기준</p> <p>㉠ 각 층마다 설치하되, 보행거리가 소형 수동식 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, 대형 수동식 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. 다만,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,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㉡ 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m²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(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)에도 배치할 것</p>			
오 류		수 정	
가목의		㉠항의	

날 짜	2015-2-10	튜 터	김엽래
강 좌 명	[E 1733]핵심 소방설비(산업)기사 필기(기계)(신규)→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(김엽래)		
	[L 571]㉠ [소방설비기사-기계]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		
교 재	[ISBN 236]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(핵심)→ p 37		
참 고 이 미 지			
<p>④ 가압수조</p> <p>㉠ 가압수조는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</p> <p>㉡ 가압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.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을 것</p> <p>㉢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할 것</p> <p>㉣ 가압수조에는 수위계·급수관·배수관·급기관·압력계·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</p> <p>㉤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화용 기계, 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[별표 14]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</p>			
오 류		수 정	
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화용 기계, 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[별표 14]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		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「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」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	

날 짜	2015-2-10	튜 터	김엽래
강 좌 명	[E 1733]핵심 소방설비(산업)기사 필기(기계)(신규)→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(김엽래)		
	[L 571]㉠ [소방설비기사-기계]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		
교 재	[ISBN 236]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(핵심)→ p 239		
참 고 이 미 지			
<p>④ 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기준</p> <p>㉠ 기동용 가스용기 및 당해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</p> <p>㉡ 기동용 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.8배부터 내압시험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</p> <p>㉢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은 1l 이상으로 하고, 당해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.6kg 이상으로 하며, 충전비는 1.5 이상으로 할 것</p>			
오 류		수 정	
내압시험압력에서		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	

날 짜	2015-2-10	튜 터	김엽래
강 좌 명	[E 1733]핵심 소방설비(산업)기사 필기(기계)(신규)→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(김엽래)		
	[L 571]㉠ [소방설비기사-기계]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		
교 재	[ISBN 236]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(핵심)→ p 397		
참 고 이 미 지			
<p>③ 설치기준</p> <p>(1) 소화기</p> <p>소화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①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A급 화재에 3단위 이상, B급 화재에 5단위이상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</p>			
오 류		수 정	
B급 화재에		B급 화재는	